

제 21 회 구미시의회 (정기회) 집회결과

건	명	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(안) 의결의 건					
집 회 기 간	1992. 11. 25 - 12. 24						
의 결 일 시	1992. 12. 5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0 명		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수상 의결 첨 부 :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(안) 1부. 끝							
1 9 9 2 년 12 월 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		
의 결 방 법	이 상 유 무						
의 결 시 잔 반 표 시	찬 성	20 명	반 대	명 기 권			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1 조 (목 적)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 치) 복지관은 구미시 관내 소재한 복지회관 건물 주소지로 한다.

제 3 조 (업 무) 복지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 한다.

1.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 증진
2. 영세가정 아동 및 근로청소년 선도
3.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
4.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제반업무
5. 기타 지역주민 복지 증진 사업

제 4 조 (시설종사자) 복지관에는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 종사자를 둘수 있으며 그 직종과 직급,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조 (운 영) 운영은 구미시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,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 할수있다고 인정될시는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수있다.

1. 운영능력이 있는 자.
2.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
3.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
4.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중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.

제 6 조 (부대시설 및 관리) 복지관에는 어린이집(탁아및유아실), 도서및 독서실, 목욕실, 직업훈련실, 상담실, 의무실, 자원봉사자실, 강당 등을 시설 관리 운영한다.

제 7 조 (시설운영) 복지관내 시설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어린이 집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자녀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.
- ② 도서및 독서실은 지역주민의 교양 함양및 학생들에게 공부방 제공을 위해 운영한다.
 1. 도서및 독서실은 무료개방하며 이용시간은 09:00~22:00로 한다.
 2. 도서의 열람은 무료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도서열람권을 받아야 한다.
 3.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된다.
- ③ 목욕실은 영세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며 사용요금은 최소한의 실비정도의 요금으로 별도로 정한다.
- ④ 직업훈련실은 영세가정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둔다.
- ⑤ 의무실은 영세가정의 보건 수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며 진료비및 의약품은 무료로 제공한다.
- ⑥ 자원 봉사자실은 청소년 교양, 건강관리, 취미교실, 기능교육 등과 재가복지봉사를 위해 운영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봉사케 한다.
- ⑦ 상담실 운영은 노인들의 고충해결, 청소년선도, 주민들에 대한 생활상담 및 부업희망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 제공한다.
- ⑧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, 도비 또는 시비로 그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운영한다.

제 8 조 (시설사용)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강당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시키고자 할때는 별지 제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등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사용허가를 아니할수 있다.

제 9 조 (사 용 료) ①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사용요금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또는 감액 할수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용할 때.
2. 복지 향상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.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
제 10 조 (사용자의 의무) 복지관의 시설및 설비를 훼손, 망실하였을시는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는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.

제 11 조 (준 용 규 정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(보사부훈령 제568호)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, 시행규칙,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.

제 12 조 (시 행 규 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도 서 열 랐 권

○ 열 랐 자

주 소		주민등록번호		연 령	세
성 명		학교(근무처)		직 업	

○ 열 랐 도 서

청 구 도 서 명	저 자 명	출 판 사 명	반 환 일 시	비 고

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2호의 규정에
의거 상기 도서를 열람코자 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

①

구 미 시 장 귀 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자 원 봉 사 신 청 서						사 진 3 × 4	
성 명	(한 글)		성 별	남 · 여		주민동	
	(한 문)		연 령	(만 세)		북번호	
현 주 소	시 동 번지						
최 종 학 교	(학 과)			전	자 택		직 장
				화			
직 업							
경 력							
취 득 자 격	면 허				복 기	취 미	종 교
면 허	번 호						
봉 사 회 망 시 간	☐ 언제든지 () ☐ 매주 (회) (시간 -) ☐ 매월 (회) (시간 -) ☐ 기타 ()						
봉 사 회 망 종 별							
상기와 같이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것을 신청합니다. 19 신청인 ④ 구 미 시 장 귀 하							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종합사회복지관사용신청서

[illegible]

사 용 승 락 서

사 용 자	기 관 단 체 명 (주소)	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사 용 기 간			예 상 인 원	
사 용 목 적			사 용 시 설	
위와 같이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을 승락 합니다. 19 년 월 일 구 미 시 장 (인)				

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위탁신청서							
어 린 이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성 별		사 전 3 × 4
보 호 자	성 명		연 락 처	직 장			
	주 소			자 택			
보호종별	거택, 자활, 의료부조						
타아 (유아) 기간 19 년 월 일 부터 ~ 19 년 월 일 까지							
위와 같이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집에 위탁코자 신청합니다. 19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(인) 구 미 시 장 귀 하							

등 록 증				
보 호 자	주 소		어린이 성명	
	성 명		보 육 기 관	19 년 월 일 부터
	주민등록번호			19 년 월 일 까지
위와 같이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 집에 위탁 등록 하였습니다. 19 년 월 일 구 미 시 장 (인)				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(안)에 대한 수정(안)

발의년월일 : 1992. 12. 5

발의자 : 산업건설 위원회

○ 수정 이유

외래어 거부감에 따른 언어 순화 차원과 운영자격 요건에 보다 전문
지식이 있는 자로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도서실외 반출 금지로 관리철저를
기하는데 있음.

○ 수정 주요 골자

- 조례안 제1조 " 서비스 " 를 " 편의 " 로 수정
- 조례안 제5조 4호 중 " 기타 " 를 "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
자 중 " 으로 수정
- 조례안 제7조 2항 3호중 "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 " 를
" 아니된다 " 로 수정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(안)에 대한 수정(안)

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" 서비스 " 를 " 편의 " 로 수정한다.

제5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4.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중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 2항 3호중 "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 " 를 " 아니된다 " 로 수정한다.

제정(안) 대 수정(안) 대비표

제 정 (안)	수 정 (안)
제1조 (목적)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(운영) 1. 생략 2. 생략 3. 생략 4.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(시설운영) ① 생략 ② 도서 및 독서실은 지역주민의 교양 함양 및 학생들에게 공부방 제공을 위해 운영한다. 1. 도서 및 독서실은 무료 개방하며 이용 시간은 09:00~22:00로 한다.	제1조 (목적)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편의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5조 (운영) 1. 제정안과 같음 2. 제정안과 같음 3. 제정안과 같음. 4.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(시설운영)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서 및 독서실은 지역주민의 교양 함양 및 학생들에게 공부방 제공을 위해 운영한다. 1. 도서 및 독서실은 무료 개방하며 이용시간은 09:00~22:00로 한다.

제정(안) 대 수정(안) 대비표

제 정 (안)	수 정 (안)
2. 도서의 열람은 무료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도서열람권을 받아야 한다. 3.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되며,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. ③ ~ ⑧ 생략	2. 도서의 열람은 무료로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도서열람권을 받아야 한다. 3.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된다 ③ ~ ⑧ 제정안과 같음.

제 21 회 구미시의회 (정기회) 집회결과

건	병	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 (안) 의결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11. 25 - 12. 24					
의 결 일 시	1992. 12. 5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0 명	
의 결 사 항						
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						
첨 부 :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(안) 1부 끝						
1992 년 12 월 7 일						
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	
의 결 방 법		이 상 유 무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	찬 성	20 명	반 대	명 기 권	

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융자추천신청)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융자추천 신청서(별지 1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조(융자추천한도액)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.

제 6조(보조기간)중 "1년"을 "융자금 대출기간"으로 한다.

부

칙

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